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60

발의연월일: 2022. 4. 7.

발 의 자:조수진·성일종·박대수

김선교 • 이종성 • 김태흠

조명희 • 배준영 • 윤한홍

김학용 · 이달곤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되어 사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사업자가 물품별 부품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소비자가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 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 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제4호). 법률 제 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품질보증기간"을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제10조(표시의 기준) 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	
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	
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4 <u>품질보증기간,</u>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	<u> 부품보유기간</u>
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